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센터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함께할 생활문화센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주요내용		
공 모 명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대상	2022 1월 기준,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사업기간	2022년 3월~12월 ※ 프로젝트 추진기간: 3월~11월(9개월)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생활문화센터 브랜드 구축형	생활문화센터 운영 모델 구축형
	지원내용	특정일을 지정한 매달 주민참여 생활문화 교류협력 프로그램 (생활문화복합형 소규모 축제)	생활문화센터 구성 공간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규모	총 725백만원 규모	
	선정규모	15백만원~20백만원	7백만원~10백만원
접수방법	<p>이나라도움을 통해 공문과 신청서 제출</p> <p>[접수서류] ① 신청공문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생활문화센터 및 위탁단체) ※ 지자체 직영 센터의 경우, 별도 주관단체 선정하여 신청, 추천서 필수</p>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02.14.(월) 17:00		
접수처	이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		
온라인 공모안내	일시	2022년 1월 19일(수)	
	진행 방식	<p>14:00 온라인 공모 안내 영상 :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 15:00~17:00 실시간 질의응답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p> <p>※ 오픈채팅방은 당일 2시간만 운영하며, 공모기간 내 질의는 아래 전화로 문의 요망</p>	
관련문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02-2623-3110 / kjm17@rcda.or.kr		

II 공모개요

□ 공모개요

- 공모명 :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2. 1. 17.(월) ~ 2. 14.(월) 17:00까지 / 29일간
 - ※ 2022. 2. 14.(월) 17: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7: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2022. 1월 개관 기준, 붙임3 참조)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한 생활문화센터 및 위탁단체
 - ※ 지자체 직영 센터의 경우, 별도 주관단체 선정하여 신청, 추천서 제출 필수

- ▶ 고유번호증 등 단체등록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 ▶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역(시군구 단위)에 소재하는 단체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음
 - ※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여부는 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부서에 문의 요망
- ▶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음(신청은 가능)
- ▶ 가산점 : 문화환경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중 1개 해당 시 1점(최대 3점)

- 지원규모 : 725백만원 / 50개소 내외(1개소 당 7백만원~20백만원 차등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9개월)
- 지원내용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브랜드 및 운영 모델 구축 활동

구분	생활문화센터 브랜드 구축형	생활문화센터 운영 모델 구축형
사업 목표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브랜드 구축	생활문화센터 내 공간과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운영 프로그램 모델 구축
사업 내용	"가칭 생활문화DAY" 생활문화복합형 소규모 축제 프로그램 (공연, 전시, 체험, 놀이, 장터 등)	생활문화센터 구성 공간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 규모	최대 20백만원 (평균 17.5백만원 지원)	최대 10백만원 (평균 8.5백만원 지원)
지원 항목	생활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특강 강사 등), 보조인력 활용비, 홍보비,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료, 회의 다과비 및 식대 등 ※ 개별 센터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임차료 등), 자산성 물품구입비는 사용할 수 없음	

□ 유형별 세부내용

- 생활문화센터 브랜드 구축형(가칭“생활문화DAY”)
 - 지원금액 : 단체별 15백만원~20백만원 차등 지원(최대 20백만원)
 - 내 용 : 특정일을 지정하여 생활문화센터에서 매달 주민참여 생활문화 교류협력 활동으로, 생활문화복합형 소규모 축제 형태의 프로그램

예 시

- “지문원 생활문화센터” 매달 둘째주 토요일 생활문화DAY(센터별 특정일 지정)
- 돛자리 장터 영화 상영 놀이 공연 전시 체험 음식나눔 등 인접 지역주민 참여 생활문화복합축제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 반드시 복합형 추진(다양한 생활문화유형별 참여 필수)
- 일회성 기획이 아닌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브랜드화
- 가칭 “생활문화DAY” 준비를 위한 사전 주민기획단 운영 및 협력회의 프로그램 운영
 - ※ 다양한 주민 및 참여 주체 간 공동기획
-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공간 활용(센터 외 타 공간 및 장소 추진 불가)

- 생활문화센터 운영 모델 구축형
 - 지원금액 : 단체별 7백만원~10백만원 차등 지원(최대 10백만원)
 - 내 용 : 생활문화센터 내 구성공간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활용한 프로그램

예 시

- 생활문화센터 구성 공간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 마주침 공간, 옥상 공간, 공동체 부엌 등 특화공간 활용 프로그램
- 공간 성격과 특성에 따른 생활문화프로그램
- 지역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프로그램
- 우리동네 생활문화지도만들기, 설화 또는 마을이야기 활용 주민 예술창작 프로그램 (동요제작 발표, 그림책 제작 발표 등)
- 지역의 상징적 가치, 지리적 의미 등 지역성이 반영된 자율프로그램

- ※ 2022년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황이 보편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
- ※ 단순 일회성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양
- ※ 신청 수, 심사 상황에 따라서 유형별 각 선정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 심사내용 및 결과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같거나 적을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고려사항

○ 아래와 같은 활동은 지원하지 않음

-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기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참여하는 주민 및 동호회 단체 사례비 지급 행사
- 단순 선진지 견학 및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활동 불가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불가
- 지역문화진흥원 "협력형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는 지원 불가

○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 (사업계획) 사업목적 및 사업 예시, 심사기준 등 사업내용과 공모내용을 참고하여 생활문화센터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예산편성) <붙임3.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목	세목	세부항목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사례비, 홍보비, 프로그램 재료비, 사업 운영 필수 경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02)	우편 발송비
	임차료(07)	장비 임차비,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 등
여비(220)	국내여비(01)	관내출장, 관외출장 등
사업추진비(240)	업무추진비(01)	진행비, 간담회비 등

○ 사업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및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 의사결정 구조 체계 마련 지향
- 프로그램 참여한 주민과 운영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과정 중심 활동 장려
-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 동일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순 일회성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양

○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 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 선정단체 예비교육 및 컨설팅(3월),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10월) 필수 참석
- 월간추진현황보고서 제출(매월 30일 또는 31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플랫폼 가입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우리 원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
-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아래의 경우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단, 대표권이나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4일(월) ※ 총 29일간
 - ※ 시간 엄수(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 필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e나라도움 공모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및 신청서 관련 문의 외 e나라도움과 관련한 문의(시스템 오류, 멈춤 등)는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02-6676-5100), FAQ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 공문 [자체서식]
 -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서식]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온라인 공모 안내

202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온라인 공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1.19.(수) 14:00 이후 상시· 방 법 : 유튜브(www.youtube.com) 지역문화진흥원 채널에서 영상 확인 ☞ https://url.kr/xhdcp8· 내 용 : 202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소개(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 실시간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1.19.(수) 15:00~17:00 / 2시간만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시간 외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방 법 : 아래 두 가지 중 편한 방법 이용<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카카오톡 → 🔍 → '지역문화진흥원' 검색 → '2022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선택 → 1:1 채팅 참여하기 → 궁금한 점 문의② 오픈채팅 링크 누르기(https://open.kakao.com/o/sKk9ybUd) → 1:1 채팅 참여하기 → 궁금한 점 문의

□ 문의 :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02-2623-3110)

II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방법

- 심사절차 : 서류심사(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후 최종 선정
- 심사일정 : 2.21.(월) ~ 2.25.(금) 중 예정
- 선정방법 : 생활문화센터 운영 분야 전문가 5인의 심사를 통한 선정
-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사업의 이해도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및 방향에 대한 이해도 	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 주민참여를 위한 추진 절차 및 체계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합리성 	40점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절차 및 세부 일정의 적합성 ■ 사업 추진체계의 적합성(업무분담, 역할 등) 	30점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기여도 ■ 프로그램 향후 발전가능성 	10점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환경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지역 해당 시 각 1점 	3점

-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총점 103점의 70%) 상위 단체 선정
 - ※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심사위원 합의하에 선정, 세부 심사 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 ※ 별도의 세부 심사계획 수립 예정

IV

추진일정

항목	일정	세부내용
신청접수	1.17.(월) ~ 2.14.(월) 오후 5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모든 서류가 구비·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행정검토	2.15.(화) ~ 2.1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방법: 서류미비 및 제출지연 등 심사 자격 검토
↓		
서류심사	2.21.(월) ~ 2.2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5명(지역문화·생활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최종 선정 ■ 합격단체 발표: 3.3.(목) 오후 6시 예정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		
선정단체 예비교육 및 컨설팅	3.14.(월)~3.18.(금)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전문가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금 관리지침 주요 내용 안내, 선정단체 교류 등 ※ 선정센터 담당자 필수 참석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3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내용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하여 교부신청 ■ 보조금 통장개설 완료 및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 교부신청 및 교부확정 ■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 신청, 승인 ※ 세부절차는 선정단체 예비교육에서 안내
↓		
사업추진	3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3월 ~ 11월
↓		
2차 교부	6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및 이나라도움 중간 정산
↓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10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통합 활동 공유 및 사업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 추진(1회)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종료(2022년 11월)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2022년 12월까지)

※ 상기 일정은 진흥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가산점 부여 지역리스트
------------	---------------------------------

□ 문화환경취약지역 : 61개 (문체부 지정)

인천 (1)	옹진군
강원 (9)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4)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 (3)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전북 (9)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3)	고령군, 김천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9)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지역 : 89개 (행안부 지정)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연계사업 지역 : 1개 (균형위 지정)

전남 (1)	진도군
--------	-----

: 2개 사업 해당(가산점 2점) : 3개 사업 해당(가산점 3점)

□ 예산편성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2년 11월 30일(수)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연구용역 불가)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본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경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

-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운영비 항목만 편성 가능
-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 불가
- ※ 단체 대표 및 소속 인력, 사업 주관단체, 센터 운영위원회의 인력 인건비 및 사례비 편성 불가
- ※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항목 편성 불가
- ※ 강사비 및 기타 전문가 활용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내 편성 가능(보조인력 활용비 제외)
- ※ 기타소모품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 ※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 ※ 화상회의 사용료(줌, 구글미트 등) 임차비로 편성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진행 및 정산 보조 등 보조인력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당 9,160원 준수 - 1인당 주 15시간(1개월 60시간)미만 준수 - 사업 기간 내 30일 이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000원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9.1.1.시행] ※ 125,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소득 신고는 하여야 함. ※ 수령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 대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로 갈음(정확한 정보 기재) ※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이행(사업소득 3.3%(계약서 필수), 기타소득 8.8%) ○ 강의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이내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이내 -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특강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 재료비 및 경비 함께 지급 불가(별도편성) - 강사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재료비 사용 지양(필요 시 담당자와 상의) ○ 특강 강사 사례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A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td> <td>300,000원</td> </tr> <tr> <td>B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td> <td>200,000원</td> </tr> <tr> <td>C급</td> <td>·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전문가 활용비 합계) 지원금의 30% 이내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1일 최대 4시간)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기준																																														
		<p>○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p> <table border="1" data-bbox="406 365 1297 689">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발표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400,000원</td> </tr> <tr>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 rowspan="2">사회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 rowspan="2">토론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50,000원</td> </tr> </tbody> </table> <p>-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지급 가능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p> <p>○ 회의 참석 사례비</p> <table border="1" data-bbox="406 898 1297 102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회의 참석수당</td> <td>· 자문회의 · 좌담회</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p>-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원) 지급 (1일 최대 3시간)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및 동호회 등에 사례 불가</p> <p>○ 행사 진행 사례비</p> <table border="1" data-bbox="406 1283 1297 1442">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행사 사례비</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p>-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p> <p>○ 원고료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406 1626 1297 1951"> <thead> <tr> <th>기준 1(원고집필인)</th> <th>기준 2(원고내용)</th> <th>사례비(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강사사례비지급 기준 A등급</td> <td>·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td> </tr> <tr> <td>·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td> <td>·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td> </tr> <tr> <td>· 일반인, 독자 외</td> <td>·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 공하여 작성한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회의 참석수당	· 자문회의 · 좌담회	10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일 기준)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기준 1(원고집필인)	기준 2(원고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강사사례비지급 기준 A등급	·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 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회의 참석수당	· 자문회의 · 좌담회	10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일 기준)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기준 1(원고집필인)	기준 2(원고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강사사례비지급 기준 A등급	·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 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시, 물품구입비(비소모품은 구입 불가) ○ 홍보물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X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등 - 사업기록, 행사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영상자료 및 유인물 제작비 - 행사 관련 공고 및 광고료(문자발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업체를 통해 제작 가능한 과업(디자인, 촬영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개인에게 제작비 지급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성 물품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비소모품은 구입 불가) - 방역물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비소모품, 도서(책), 기념품(행사용 홍보물) 구입 불가 (필요시 임차하여 사용) 	지원금의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검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필수 책정(296,000원/부가세 포함) 	필수 편성																									
	공공 요금 및 제세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편성 불가 																										
	임차료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시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줌, 구글미트) 이용료 ○ 악기, 의상 등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경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내역</th> <th>지급방법</th> <th>지급액(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관내</td> <td rowspan="2">여비</td> <td rowspan="2">정액</td> <td>- 4시간 미만 : 10,000원/1일</td> </tr> <tr> <td>- 4시간 이상 : 20,000원/1일</td> </tr> <tr> <td rowspan="4">관외</td> <td rowspan="2">교통비</td> <td rowspan="2">실비</td> <td>-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td> </tr> <tr> <td>-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해당 구간 대중교통 운임비 지급</td> </tr> <tr> <td rowspan="2">숙박비</td> <td rowspan="2">실비 (1박당)</td> <td>-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td> </tr> <tr> <td>- 광역시 : 60,000원/1박</td> </tr> <tr> <td rowspan="2">식비</td> <td rowspan="2">정액</td> <td>- 그 외 : 50,000원/1박</td> </tr> <tr> <td>- 20,000원/1일</td> </tr> <tr> <td rowspan="2">일비</td> <td rowspan="2">정액</td> <td>- 20,000원/1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해당 구간 대중교통 운임비 지급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식비	정액	- 그 외 : 50,000원/1박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해당 구간 대중교통 운임비 지급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식비	정액	- 그 외 : 50,000원/1박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진행비(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발표회, 행사 등에 대한 다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6,000원/1인 ※ 프로그램 매 회차마다 다과비 사용 불가 ○ 간담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 기준단가: 10,000원/1인 기준 	지원금의 10% 이내																									

붙임3

생활문화센터 개관 목록

구분	시도	시군구	센터명	운영방식	개관연도
1	서울 (5)	금천구	가산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17
2		은평구	은평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3		종로구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4		서대문구	독립문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5		광진구	광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6	부산 (20)	동구	범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7			좌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8			초량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9			매곡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10			수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11		부산진구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2			전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3		북구	금곡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4			화명생활문화센터	직영	2021
15		사상구	감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6		사하구	두송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7		서구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8			동대신3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9		수영구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20			구락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21		영도구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민간위탁	2018
22		중구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23			부산 생활문화센터 (한성1918)	민간위탁	2018
24		금정구	장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1
25			섯골(서3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26	대구 (10)	남구	대덕문화전당 대덕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27			대명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28		달서구	달서 생활문화센터 장기점	민간위탁	2016
29			달서 생활문화센터 송현점	민간위탁	2016
30		달성군	서재 행복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31		북구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32		서구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33		동구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34		달성군	하빈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1
35		수성구	함장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1
36	인천 (10)	미추홀구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민간위탁	2016
37		동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38		부평구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민간위탁	2017
39		연수구	507 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40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41		옹진군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42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43		중구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민간위탁	2016
44		중구	개항장 문화마당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45		계양구	계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46	광주 (8)	광산구	광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47		남구	남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48		서구	농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49		서구	광주 서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50		서구	치평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51		서구	서창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9
52		북구	북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53		동구	전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54	대전	서구	둔산1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55	(4)		대전시립미술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56		중구	한밭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57		동구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58	울산	북구	울산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59		울주군	울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60	(3)	중구	중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61	세종	본청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62	(2)	세종시	부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63	경기 (16)	고양시	아람마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4			호수마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5		김포시	월곶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66		동두천시	동두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7		부천시	오정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68			소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69		성남시	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70		수원시	수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71			지동 창릉마을 창작센터	직영	2015
72			경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73		양주시	777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15
74		용인시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75		평택시	현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76		화성시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77		군포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78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하다	직영	2020
79		강릉시	임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80		동해시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81		영월군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82			덕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83	원주시	원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84		판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85	철원군	화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86	춘천시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87	평창군	달빛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8	
88	화천군	화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89	양구군	동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90		남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91		방산면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20	
92	정선군	북평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1	
93		임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21	
94	충북 (4)	괴산군	괴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95		청주시	청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96		충주시	충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97		단양군	매포읍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1
98	충남 (10)	금산군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99		당진시	당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00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01		부여군	부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102		서산시	서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4
103		아산시	온양문화원 온양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04			배방마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05		태안군	태안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06		서천군	기벌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1
107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21
108	전북 (15)	고창군	고창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09		김제시	김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10		완주군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111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12			삼례 생활문화센터1,2	민간위탁	2017
113	장수군	장수한누리전당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14	전주시	삼천문화의집	삼천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15		진북문화의집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16		효자문화의집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17		인후문화의집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18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19		정읍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20		진안군	진안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21		순창군	순창군Stay20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1	
122		부안군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123		광양시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4		전남 (11)	보성군	겸백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25	조성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6	순천시		순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민간위탁	2018	
127	여수시		여수	예술인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28	장흥군		천관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9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30			계곡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8	
131			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132			화순군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133	화순읍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34	경북 (9)		경산시	경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135		군위군	군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36		상주시	상주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5	
137		성주군	성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38		영덕군	영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39			예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40		영천시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41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42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1	
143		경남 (11)	거창군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5
144			남해군	남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45	밀양시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46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47			기산리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48	산청군		덕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49	창원시		중앙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50	하동군		악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51	김해시		김해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152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20	
153	창원시		성호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154	제주 (6)	제주시	영평하동	알무드내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55			내도동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56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57			우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58			해안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159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20	